

EU의 도산기업 패자 부활제도

한 정 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특집]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신 외국법제정보는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5호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6호 기술·문화·산업간의 연계와 융합

제7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제8호 중소기업의 회생간소화

I. EU 패자부활제도 개관

II. EU 파산현황과 패자부활제도의 배경

III. EU의 중소기업 관련 패자부활제도

1. EU SBA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2. 파산과 재도전 프로젝트
3. EU 도산규정

IV. 마치며

I. EU 패자부활제도 개관

EU에서는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게 파산과 패자부활은 단순히 개별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의 과소에 관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EU 전체 경제적 기반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EU에서의 패자부활은 제도전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EU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의 패자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고 각 회원국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에서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실패한 중소기업의 제도전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EU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 이하 '도산규정'이라 한다)」을 현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2월 개정하였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산과 제도전(Bankruptcy and Second Chance)”에 관한 2년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국의 전문가들은 파산과 제도전 기회에 관련된 그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사례와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는 등 회원국 간의 공통절차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

II. EU 파산현황과 패자부활제도의 배경

EU의 중소기업 수는 2,300만개(전체 기업의 99%), 고용인력은 9,000만명(민간부문 고용의 67%)로 추정될 정도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전반을 지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²⁾ 이들 중소기업이 EU 국가들에서 창업을 통해 영업을 시작하고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유럽의 경제생활에 내재된 자연적인 과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EU에서 기업의 50%는 창업 후 5년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 각국의 전문가들은 2009과 2010년 4차례 만나 정보와 선례를 교환하였고, 파산 및 제도전에 관한 중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2) 한정미,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7. 31, 13면.

15%가 파절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은³⁾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나타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이 폐업 관련 수치를 보면, 2009년에 46%로 증가한 후, 2010년 5%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20만개 이상의 기업이 매년 EU에서 파산하였고, 매년 170만개의 실업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EU에서의 파산은 국제파산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략 5백만 유럽 기업들의 고객이나 채권자 또는 사업파트너들은 다른 회원국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은 파산발생시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각 국 도산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대략 5만개의 기업(5백만의 1%)이 채무자로 전락하고 적어도 10만개의 기업은 국제도산에서 채권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⁵⁾

국제파산은 대기업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SMEs)보다 대기업이 국제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파산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20%가 해외에 자회사나 합작회사를 두고 있는데,⁶⁾ 전체 EU에 이천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 중 해외 자회사나 합작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백만 개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의 파산은 유럽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유럽기업의 0.2%에 해당하지만 EU에서 30%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총부가가치(gross added value; GAV)의 41%를 담당하기 때문이다.⁷⁾

대기업은 또한 해외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파산은 상당한 연쇄효과(knock-o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EU에서도 기업의 파산과 개인파산이 구분되지 못하여 특히, 중소기업의 지속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적 특징을 드러내는 사항을 보면 기업에 관한 파산법이 개인파산 법률에서 발전된 부분으로 진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파산관련 법률은 처음에는 자연인의 파산에 대한 내용을 기업의 부실 부분에 유

3) OECD, "Bankruptcy and second chance for SMEs(Dimension 2)", 2012, p. 84.

4)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2011. 1, p. 3.

5)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4.

6) 대조적으로 EU의 중소기업은 5%가 해외에 자회사나 합작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ropean Commission, "Towards a new European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 2012. 12. 12, p. 2.

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4.

추적용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상인과 비상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기업, 개인회사 등을 포함하는 상인은 기업에 관한 파산제도 하에서, 소비자 등을 포함하는 비상인은 구분된 파산제도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⁸⁾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에 관한 파산법률과 기업에 관한 파산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구분되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회사의 부실 판단기준은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 국가에서 기업의 상당수는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결제의 부담(부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회사 주주의 개인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파산이 개인의 파산과 얽히게 되는 것이다.⁹⁾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부실화 현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¹⁰⁾ 따라서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파산을 막는 것은 결국 개인의 파산을 예방하는 것이 되며, 전체 국민의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I. EU의 중소기업 관련 패자부활제도

1. EU SBA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의 제정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SBA는 리스본 아젠다¹¹⁾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법적, 재정적 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2008

8) Catherine Bridge, “Insolvency-a second chance?”, Law in transition 2013, p. 32.

9) Ibid., p. 33.

10) 이에 관한 상세는 Koide Atsushi,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 경영자의 보증”,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기업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공동학술대회, 2013. 10. 18, 77면 이하 참조.

11) 2000년 리스본에서 열린 EU 이사회는 “2010년까지 EU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지식기반 사회로 만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리스본 아젠다(Lisbon Agenda)’로 명명된 이 정책은 경쟁력과 고용,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3개의 “황금측(golden triangle)”을 달성함으로써 유럽을 가장 살기 좋은 국가, 보다 현대화된 유럽형 사회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유럽 중소기업 헌장(European Charter for Small Business)’은 리스본 아젠다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이노베이션, 고용창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정책에 지침을 주고 있다. 이 헌장에서는 유럽연합이 중소기업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원칙(Principles) 부문에서 제시한데 이어 실행지침(Lines of action)으로서 “① 창업교육 및 훈련, ② 쉽고 빠른 창업, ③ 창업지향적으로 규제 완화, ④ 기술훈련 및 평생교육 지원, 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개선, ⑥ 통신, 유틸리티,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 시장 창출, ⑦ 조세, 금융

년 6월 25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것이다. 이후 EU 의회에서는 2009년 3월 10일 SBA 결의안을 통과시켜, SBA의 시행의지에 더 무게를 실었으며, SBA 제정 약 2년 후인 2010년 1월 28일에 SBA의 일부에 대한 개선안이 결의되었고, 2011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SBA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SBA 리뷰를 발표하였다.¹²⁾

SBA에서는 중소기업의 패자부활, 재도전의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SBA 10가지 원칙 중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제1원칙은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유럽에서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사업양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하여, 멘토링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한다.¹³⁾

다음으로 제2원칙인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이 신속하게 재도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국 가운데 기업에게 새로운 시작을 촉진하도록 하여 1년 이내에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신생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¹⁴⁾

마지막으로 제4원칙인 “공공 행정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는 것이 SBA에서 중소기업 재도전지원 관련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원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보면, EU와 회원국들은 전자정부와 윈스톱 솔루션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여, 중소기업들이 가능한 한 간소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며, 사업면허 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을 가속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¹⁵⁾

이와 같은 중소기업 재도전지원에 관한 SBA의 원칙 중 특히 주목할 것은 역시 제2원칙이

시스템 개선, ⑧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⑨ 성공사례 벤치마킹 지원, 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제시하였다. 한정미, 앞의 보고서, 13-14면.

12) 한정미, 앞의 보고서, 14면.

13) 이와 관련한 상제는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09 on the Small Business Act, 10306/09(Press 155) - Press Release, 2945th Council meeting, Competitiveness, COM, 2009. 참조.

14) European Commission, “Business Dynamics : Start-ups, business transfers and bankruptcy”, 2011. 1, p. 16.

15) 한정미, 앞의 보고서, 34면.

라 할 것이다.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는 원칙을 통하여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의 모범사례를 교환하여 재도전 기회에 관한 정책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파산(non-fraudulent bankruptcy)의 경우, 1년 이내에 사업의 청산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였으며, 재도전업자들에 대하여 신규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다.¹⁶⁾

2. 파산과 재도전 프로젝트

SBA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EU는 회원국,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EEA)¹⁷⁾ 국가들 및 후보 국가들에게 “파산과 재도전(Bankruptcy and Second Chance)”에 관한 2년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¹⁸⁾

이 프로젝트의 주요목적은 ‘파산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과 직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어떤 과정으로 도산기업을 지원하여 고의성이 없는 기업가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가’에 있었다.¹⁹⁾²⁰⁾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²¹⁾를 보면,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도산과정을 구성하는 네 개의 영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²²⁾ 이 프로젝트에서는 창업한 회사는 창업 이후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운영하는 동안 상당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적절한 시기의 재건지원을 통해 다시 회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전제로 ① 예방(조기경보 시스템, 지원 메커니즘), ② 법정 밖에서 협의

16) European Commission, “Business Dynamics : Start-ups, business transfers and bankruptcy”, 2011. 1, p. 17.

17) EU의 EEA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정책에 관한 공통수용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10월 현재 33개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http://www.eea.europa.eu/about-us>).

18) Croatia, Iceland Montenegro, Norway, Serbia 및 Turkey와 모든 EU 회원국들은 전문가를 임명하였다.

19)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2011. 1,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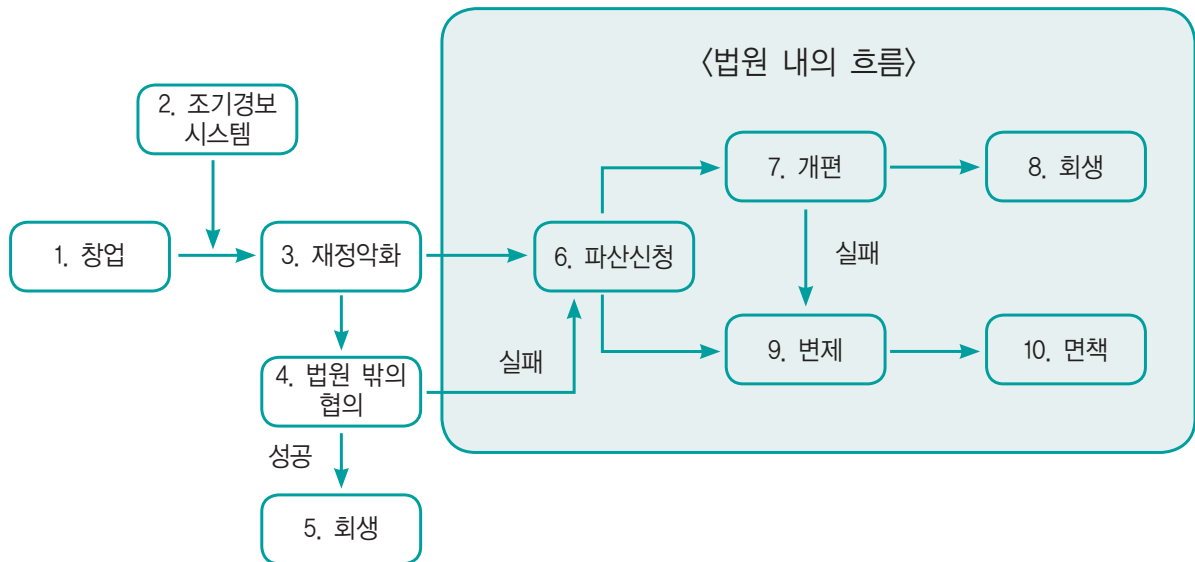
20) 이를 위해서 파산과 재도전의 각 영역에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관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기업의 역동성(Business Dynamics)”에 관한 독립된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그룹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21)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2011. 1. 보고서를 말한다.

22) 아래에서 설명하는 예방, 법정 밖의 협의, 법정 내의 절차, 재도전을 위한 파산 후 기업가에 대한 치료의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동 보고서 611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조정), ③ 법원 안의 흐름(절차), ④ 파산이후 기업재건과 재도전을 위한 조건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림 1〉 도산절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2011. 1, p. 6.

첫째, “파산과 재도전”의 프로젝트에서 ‘예방’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 기업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영업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파산하여 기업의 활동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보다 계속 기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 즉,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도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은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예컨대, 부실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사전적인 예방을 하도록 하는 것과 효율적인 파산 및 지급 불능시스템을 갖추고 따르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둘째, ‘법원 밖의 협의’ 검토는 기업의 수명 동안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에 대한 사항이 해당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 발생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 구조조정 기간 동안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용 또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정 밖에서 협의로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법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법원 밖에서의 협의는 기업의 존속,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되며, 이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참여하는 기업의 초기 거부감을 극복하는 문제와 특히 관련이 있다. 법원 밖에서 조속한 금융 구조조정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해당 기업이 기업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기업가가 직접 사업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한편, 채권자와 타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법원 내의 절차’는 법원 밖의 협의를 성공하지 못한 기업이 정식 재판절차를 법원 내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로 작용하게 되고, 구조조정 계획에서는 부채 일부의 면제 허용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파산법의 효율성 수준은 고용비율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법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지원이 필수적이며, 신용시스템은 보안 및 무담보 채권자에 대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채권자 권리와 채무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제공하고 정리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파산절차가 채무자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관리자가 임명 되어야하며, 파산기업에 대한 분석은 가치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법원의 절차가 시작되면 파산절차는 빠르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잠재적 재도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한편, 파산 및 구조조정 절차에 있어서 소규모 기업을 위한 단순화 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입법자들이 고려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선호하여 법원의 절차를 주로 따르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전조치 의정서의 도입을 고려하는 아일랜드와 같이, 파산신청을 채무자가 하기 이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 가정산이나, 자발적 채무관리 계획을 협상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법원의 파산절차 진행을 최후의 선택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넷째, ‘재도전을 위한 파산 후 기업가에 대한 치료’에서는 재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훼손

23) European Commission, “Business Dynamics : Start-ups, Business Transfers and Bankruptcy”, 2011.

방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점차 많은 국가에서 파산을 기업의 경험(학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직하게 경영하였으나 부도를 하게 된 경우에도 실패한 기업가에게 부정적인 기업이라는 낙인을 가지게 하는 것은 채무상환의 부담이 오히려 길어지게 되거나 새로운 시작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게 회생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새로운 시작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벽을 줄임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재도전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매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⁴⁾

한편, 기업이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금융기관이 개인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자체가 새로운 기업의 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실패의 대부분은 기업가의 무능력이 아니라 외부환경으로 인한 것이지만 입법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내거나, 기업의 실패와 개인의 실패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고의로 파산을 하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의 압력에서부터 보호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도전라는 개념이 국가의 법령에서는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고의로 파산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인식하여 그렇지 않은 파산과 구분하는 것은 파산자체의 오명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3. EU 도산규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EU에서는 매년 평균 20만개의 기업이 파산하였고, 이로 인해 170만의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파산가운데 약 4분의 1은 국제도산이었고, 도산규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국제적 거래를 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파산기업의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에 앞서, 채무자 및 파산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실업과 관련하여서는 파산의 규모보다 더 파급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도산규정(EU Insolvency Regulation)’의 개정²⁵⁾ 도산규정 도입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 변

24) OECD, “Bankruptcy and second chance for SMEs(Dimension 2)”, SME Policy Index : Eastern Partner Countries 2012, p. 87(<http://dx.doi.org/10.1787/9789264178847-en>).

25)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Revision of Regulation (EC) No 1346/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p. 2.

화된 정치환경과 경제환경, 도산규정의 사용증가, 채무자 보호, 특정고려 지역에 관한 사항, 도산규정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 등을 포함한 논의가 EU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²⁶⁾ 특히, 역사상 가장 큰 경제위기를 직면하여, European Council은 금융통합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에 있어 유럽연합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경제성장은 EU 집행위원회의 정의에 관한 핵심 아젠다에 해당하며, 정의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도산규정의 개정이었다.²⁷⁾

도산규정은 EU에서의 국제도산에 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관할, 파산관련 결정의 승인 및 집행 그리고 적용법률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한 것에 의미를 들 수 있으며, 또한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절차에서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다.

도산규정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내에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거나 채무자의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주된 도산절차(main proceedings)의 개시와 관련된 관할은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centre of main interest: COMI)²⁸⁾의 법원이 갖도록 하고 있다.

도산절차에 관련한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절차가 개시된 국가의 법률이며, 특히 준거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순위와 절차적 권리가 결정된다.

IV. 마치며

현재의 실패가 장래의 성공을 위한 거름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실패가 단순히 폐업으로 종료된다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폐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폐업 후 그들의 실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여전히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직한 부도의 경우에도 파산 후의 오명과 차별에 따른 고통을 겪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은 파산을 두려워하여 아예 기업을 시작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만들고 있다.

실패하는 기업이 생기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이미 예정해 놓은 것이고, 기업이 서로 경

26) Clifford Chance LLP, “European Insolvency Procedures 2012 Edition”, 2012. 9, p. 5.

27) Irish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Informal Justice and Home Affairs Minister’s Meeting”, 2013. 1. 18, p. 1.

28) “주된 이익의 중심지, center of main interest, COMI”는 국제도산절차 진행시 관할 결정 기준.

쟁하면서 이긴 기업이 살아남고 실패한 기업이 퇴출되는 체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²⁹⁾ 이러한 체제에서 패자에게 다시 재도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중소기업에게 재도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용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파산과정에서 채무자를 지원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함께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무시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인 기업에게 높은 금리의 대출을 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오히려 부담을 부과하면서도 보장해 주는 역효과의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모든 과정은 실패와 관련된 오명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영업 중인 채무자의 이익과 채권자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 중 금융지원은 재도전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재도전하는 기업은 그에 적합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받아야 하고, 일반적인 파산절차에 의한 긴 상환기간과는 별도의 자금제공, 신용제공이 필요하다.

결국 고의로 파산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구별은 재도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수혜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불공정 경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 한정미, 「EU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Bridge Catherine, “Insolvency-a second chance?”, Law in transition, 2013.
- Clifford Chance LLP, “European Insolvency Procedures 2012 Edition”, 2012.
-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2011.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 European Commission, “Business Dynamics : Start-ups, business transfers and bankruptcy”, 2011.
- Irish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Informal Justice and Home Affairs Minister’s Meeting”, 2013.
- OECD, “Bankruptcy and second chance for SMEs(Dimension 2)”, 2012.

29)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27면.